



국 토 교 통 부



수신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국공유지 내 가설건축물 허가 시 대지사용권원 확보 관련)

1. 경기도 건축디자인과-23952(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한 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 가목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질의의 국?공유지에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시설사무관

노수환

행정사무관

이채훈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1. 11. 29.

이진철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2346

(2021. 11. 29.)

접수 건축디자인과-25570

(2021. 11. 29.)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38 팩스번호 044-201-5574 / rsh4614@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